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회칙 (정관) (By Law)
(BYLAWS OF KOREAN AMERICAN FEDERAL OF LOS ANGELES)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merican Federal of Los Angeles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LA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인동포의 권익옹호와 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 미간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타민족 공동체와의 교류 및 이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인 공동체 내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건강, 고용, 연장자, 차세대 복지 및 문화 발전을 위한 자체적 또는 타민족, 타민족 비영리단체(미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와 공동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건설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제 4조: (관할)

본회는 L.A. County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미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로 한다.

제 5조: (주소지)

본회는 981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한인타운 (Korea Town) 에 둔다.

제 2장 조직 및 회원

제 6 (1) 조 : (조직)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다음의 기구들로 구성된다.

1. 회장, ~~제 1~~ 수석부회장, ~~제 2~~ 수석부회장, (8인 이내의) 부회장, 이사장, 수석 부이사장, 부이사장, 재무관리이사, 기부관리이사, 홍보관리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는 한인회의 임원으로서 조직을 구성한다. 임원의 자격 및 임명 등에 대한 사항은 제 3장에서 이를 정한다.

2. 회장단은 고문변호사 및 자문단을 두어 업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3. 회계/재무, 기부, 홍보, 사무의 각 사업부서가 본 회칙 제 (1장) 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위의 ~~6조 1항~~ (2장 1조 1항)에 기재 된 재무관리이사, 기부관리이사, 홍보관리이사, 그리고 사무총장이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 7 (2)조: (회원)

본회는 LA County 내에 거주하는 한인계로 구성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부모 중 적어도 일방이 한국인 한인계로서, 18세 이상의 LA County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타지역 거주자도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 8 (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인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해 등록한 자로, 본회로부터 우선적 각종 서비스를 받으며 우대회원으로 대우받는다. (단 준회원도 동일하다)

제 3장 임원

제 9 (1)조: (임원의 구성)

본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1인):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한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직선제의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도록 한다. 회장은 재임 기간 중 타 단체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 회장 입후보 자격은 선관규정 및 세부규정에 따른다.

2. 수석 부회장(2인): 회장을 보좌하며 그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회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리하여 총괄하며 회장에게 보고한다. (회장의 공석 시에는 제 3장 5조에 의거 이사회의 가결을 거쳐 선출된 자가 결정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그 수는 8인 이내로 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가결을 거쳐) 상근직을 둘 수 있다.

5. 부이사장: 이사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이사장 2인 이내, 부이사장 8인 이내로 부이사장단을 구성하며 이사장의 공석 시, 제 13 **(3장 5)**조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재무관리이사, 기부관리이사, 홍보관리이사 (각 1인): 회장을 보좌하며 결원이 생길 시 회장이 임명한다. (제 3장 11조 1항에 따라 결원을 충원한다.)

제 10 (2)조: (회장 및 임원의 자격)

아래와 같이 회장 및 임원자격에 제한을 둔다.

1.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어야 하며, 미국 및 한국의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2. 회장은 선거일 기준 10년 내 본 한인회는 물론 미국 및 한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 임원, 회장 등으로 봉사활동 하던 중 자격박탈, 제명퇴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3) 회장은 위의 자격요건 외에 선거일 기준 2년 내 LA카운티에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최근 10년 내 본 한인회 이사 또는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3. (4) 또는 미국 및 한국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서 선거일 기준 최근 7년 내 3년 이상 임원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으로 봉사활동 한 자로 한다.

4. (5) 또한 회장은 미국 및 한국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현직회장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현직 이사장인 경우, 임후보등록일 기준 15일 전까지 (당선일 기준 7일 이내에) 그 직책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 11-(3)조: (임원의 임명)

1. 본회의 회장은 이사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재무관리이사, 기부관리이사, 홍보관리이사)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재무관리이사, 기부관리이사, 홍보관리이사,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 없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채용, 임명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을 (회장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신임회장 당선자는 인수위원을 임명하여 제반업무를 인수한다.

5. 신임회장 당선자는 연임이사와 함께 초기이사회를 구성한다.

제 12-(4)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

1. 본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현직 회장에 한하여 단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전직회장은 입후보 할 수 없다.

2. 본회의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3-(5)조: (임원의 보선)

본회 회장 및 이사장의 공석 시에는 아래 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임원이 각각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장의 공석 시에는 수석 부회장과 이사장 중 이사회 채택 (참석) 인원 2/3 이상을 득한 자가 회장의 잔여 임기기간을 승계하며, 수석 부회장의 공석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상기 제 3장 3조 1항에 의거하여 수석 부회장을 선출한다.)

2. 이사장(또는 임원의 결원, 또는)의 공석 시에는 수석 부이사장 중 이사회 채택 인원 2/3 이상을 득한 자가 이사장의 잔여 임기기간을 승계하며, 수석 부이사장이 채택인원 2/3 이상 득하지 못할시 부이사장 중에서 선출한다. (상기 제 3장 3조 임명과 제 6장 2조 의결에 의거하여 새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한다.)

3. 임원의 결원 시에는 11조에 의거하여 임명을 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0조 의결에 준한다.)

제 4장 이사회

제 14 (1)조: (이사회 의 구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5 (2)조: (이사의 자격)

본회의 이사는 본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 (제 7조 2항) (제 2장 2조) 으로,

1. 미국 내 합법체류자격 자로서 미국 및 한국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동일)

2. 본회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자동이사가 된다.

제 16 (3)조: (위원회)

본회 이사회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다만 (회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는 매월 각 부서의 업무활동을 심의, 감시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매월 소집하며, 논의된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1) 사무국 (운영위원회): 각종행정업무, 홍보,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재정관리 등 (한인회 각종 행정업무 총괄, 재정관리, 사무국 직원 임명)
- 2) 민원봉사국 (동포단체위원회): 각종민원대행, 번역, 노인 및 저소득층 각종정부혜택 등
- 3) 청소년 지도국 (차세대위원회): 한글학교, 과외지도, 청소년상담, 태권도, 교양과목 등
- 4) 의료봉사국 (공공안전위원회): 기초건강검진,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클리닉 운영, 저소득층 및 서류미비자 치료안내 등, 당뇨교실 운영, 한국병원 (원광, 단국, 연세, 충북대) 종합검진 안내, 건강세미나
- 5) Food Bank 국: 저소득 층 주민을 위한 식료품 무료배부, 신청 등의 업무 관할 (대외협력위원회):
- 6) 가정상담국: 부부상담, 자녀상담, 결혼상담, 가정폭력 (DV) 상담 등
- 7) 노인국 (사회복지위원회): 노인회원 전문관리, 노년층 이벤트, 노인아파트 등 전문화
- 8) 7) 직업훈련원 (문화/체육위원회): 직업교육학교-샘플메이킹, 패턴메이킹, 바즈공예, 킥북 등 전문인력 양성
- 9) 8) 평생학습원 (홍보위원회): 리더쉽 개발교육, 성인학습지도, 글쓰기지도, 독서지도자 양성, 미술 독서치료사 양성

3) 상기 위원회는 임명된 각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의 사업내역, 사업목적, 사업 계획 및 실행 안을 작성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매년 9월 정기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승인된 사업안은 정관의 부칙으로 사무총장/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사무국에 영구 보관한다.

제 5장 자문회의

제 17-(1)조: (자문회의)

본회는 회장 자문기관으로 (회장의 추천으로) 상설자문회의 제도를 둘 수 있고 (으며) 자문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되며 필요시 회장의 의결로 소집될 수 있다.

제-18-(2)조: (자문회의의 구성)

자문회의의 구성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제 6장 2조에 의하여 의결된 자로 한다.)*
~~이사회의 감사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 인준을 받은 자로 구성된다.~~

제 6장 회의

제-19 (1)조: (회의)

본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갖는다.

1. 연차회의

1)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 및 임원을 인준 받는다.

2)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개정위원 5인 이내로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3개월 내에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이사회비 책정 등 상정된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위의 안건이 추가심의를 요할 경우,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정기이사회:

정기 이사회회의는 매월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이사장이 소집하며 (개최되며, 날짜와 시간은 회장과 이사장의 협의에 의해 이사들에게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10일 전에 통보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FAX, E-MAIL 또는 상응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을 포함한다.)

3. 임시이사회:

임시 이사회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총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소집 일, 장소, 안건을 최소 3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보한다.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FAX, E-MAIL 또는 상응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을 포함한다.) 긴급을 요할 때는 해당 특별위원회로 대처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임원회의로 매월 회장이 소집하며, 토의된 안건 (중 이사회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은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의 상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구한다.)은 아사회에 상정한다.

제-20 (2)조: (의결)

본회의 본 회칙 제 19조에 명기한 모든 회의는 총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 (위임자 포함)으로 성원이 되며, 모든 결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회칙 개정 및 회장 유고시 선출은 채택 (성원) 이사 2/3 (위임자 포함)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7장 선거 및 선출

제-21 (1)조: (회장의 선출)

본회의 회장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 규정 및 세부규정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한다.

제 22 (2)조: (이사장(,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영입)

이사장(과 임원 선출)은 (회칙 제 3장 3조와 6장 2조 의결에 의하여) 연차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를 득한 자로 선출한다.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동의를 얻은 자로) 영입은 (회칙 제 6장 2조의 의결에 따라 선출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아사회의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제-23 (3)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본회의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아사장단에 (회장에게) 위임하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위원장은 임명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 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아사회의 가결 없이 부위원장을 선(입)출할 수 있다.

제-24 (4)조: (감사의 선출)

본회는 본회의 이사로 구성된 내부 전문성 있는 감사요원 2명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다.(선출한다.)

제-25 (5)조: (취임식)

본회 회장단 및 이사 당선(선출)자는 당해 연도 6월 10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7월 31일)사이 에 취임식을 갖는다.

제 8장 재정

제-26 (1)조: (재정)

1.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사 연임자는 이사회비를 연임사 1/4(25%)를 할인혜택을 준다. (단, 임원은 제외하며, 임원에서 이사로 연임하는 경우는(예만) 할인혜택을(적용)받는다.)

2. 본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이사회비,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3. 본회의 임원회비는 회장이 조정 (이사회의 가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7 (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28 (3)조: (감사)

(감사는 회계를 자료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최소한 년 1회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회의 감사 및 감사 요원은(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75일 이내에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보고와) 감사 의견서 및 지적 사항 등을(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고하도록 한다.

제 9장 분쟁 중재 위원회

제 29 (1)조: (분쟁 중재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LA County 내의 한인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할 목적으로 분쟁 중재 위원회를 둔다.

제 30 (2)조: (구성)

분쟁 중재 위원은 한인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위촉된 10인으로 구성하되 분쟁의 성격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 될 때는 관련 협회 혹은 단체의 대표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0장 상벌

제 31-(1)조: (포상)

본회는 이사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의 결의로 본회 회원이나 본회 후원자에 대한 포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2-(2)조: (제명)

1. 본회의 (회장을 제외한 (이사장)) 임원 및 이사가 정관 및 내규에 규정된 의무를 (상당 기간)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서면과 직접 대면을 통하여 사유를 파악하며, 제명에 이르는 심각한 과실이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이사회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또는 직무정지 할 수 있다. 단 회장 및 이사장의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또는 직무 정지 시킬 수 있다.

2. 1년 동안 정기이사회에 3회 이상 무단불참 하는 경우도 (정관 및 내규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한 사유로 동 10장 2조 1항에 의하여) 이사회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또는 직무정지 할 수 있다.

3. 3개월 이상 임원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도) (정관 및 내규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한 사유로 동 제 3장 2조 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제명 또는 직무정지 할 수 있다.)

제 11장 부칙

제 33 (1)조: (규정의 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4-(2)조: (시행 세칙 및 부칙)

한인회 회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 세칙 및 부칙을 둔다. 시행세칙 및 부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운영하도록 한다.

제-35-(3)조: (회칙 개정의 효력)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개정위원 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여 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정안을 개정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본 회칙의 개정(개정된 정관)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즉각적) 효력을 갖는다.

2012 년 3월 2일

이전 개정일: 2012년 3월 2일

최종 개정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선거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본회 회장 선거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는데(여 회장을 선출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조(선관위 구성)

1) 선거관리 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

(단, 지역투표소 증설시 각각 1인이 추가되며, 2항에 의해 선출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 1인 및 선거관리위원 4인은 한인회 임원, 이사 중에서 한인회 회장이 추천하여 (정관 제 6장 2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 4인은 한인단체 중에서 추천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인회 회장이 임명한다.

4)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한다.

5)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부서를 임명한다.

부위원장 1인, 재무위원 1인(재무담당), 감사 1인, 사무국장은 ~~선관위에서 별도 채용한다.~~

6) 선관위의 결정으로 소정의 사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관위원 및 상기 인사 전원은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7) 선관위원회 또는 선관위원의 선거관리 규정의 중대하며 심각한 위반 시에는 정관 제 6장 1조 3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소명을 거쳐 정관 제 6장 2조의 일반 의결 원칙에 따라 제명처리 할 수 있으며, 상기 제 2조 2항과 3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다. 규정위반의 주체가 선관위원회의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소명을 거쳐 성원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관위를 해체할 수 있으며, 원만한 선거진행을 위해 본 선거관리 규정 제 2조 2항과 3항에 따라 즉각적 재구성을 할 수 있다.

제 3조 [선거 사무국]

1) 선관위는 원활한 선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인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2) 선관위는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선거를 위한) 특정 관리(전문)업체를 위탁할 수 있다. (선정해 업무의 효율을 꾀할 수 있다.)

3) 선관위 사무국장은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원장(의) 지시를 준수한다.

제 4조 [입후보자 자격]

- 1) 입후보자의 자격은 최근 2년 이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한 자;
- 2) 미국 법에서 정한 금고이상의 형이나 중범 전과자, 금치산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별자 참조 당회 정관 제 3장 2조 참조~~)
- 3) 선거일 기준 10년 내 본 한인회는 물론 미국 및 한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 임원, 회장 등으로 봉사활동 하던 중 자격박탈, 제명퇴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당회 정관 제 3장 2조 참조);
- 3) 4)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그리고
- 4) 5) 선거일 기준 5년(10년) (10년) 내에 본 한인회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 2년 이상, 혹은 미국 또는 한국정부에 등록된 타비영리 단체에서 선거일 기준 7년내 3년 이상 임원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이사장)으로 봉사활동을 한 자(로 해당 단체의 공식 서류확인을 거친 자) (당회 정관 제 3장 2조 참조)

제 5조(후보 등록 절차)

1) 회장 입후보자는 아래에 열거된 서류와 소정 금액을 선거일(투표일) 40일 전에 등록과 동시에 선관위에 접수시켜야 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한인회 선관위 양식)
- (2) 한인회에서 정한 양식의 이력서 1부
- (3) 최근 2년 이상 LA 카운티에 거주한 증명 서류 1부
- (4) 서약서(한인회 선관위 양식) 1부
- (5) 회장입후보등록금
- (6) 모든 등록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장입후보등록금 내역 및 사용

(1) 회장입후보등록금 ~~\$100,000~~불은(자는) 회장입후보등록비 \$50,000불과 선거비용 \$50,000불(총 십만불 (\$100,000.00)을 상기 제 5조 1항에 의거해) 로 구분한다. (납부한다.)

(2) 회장입후보등록비 \$ 50,000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납부된 금액 \$100,000.00은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3) 입후보자 가운데, 회장 당선자와 (자진 사퇴, 또는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자격박탈 등의 중도탈락자에게는 입후보등록비나 선거비의 구분과 상관없이 납부된 금액) 회장입후보등록금 \$100,000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4) 회장후보등록금(비 \$50,000은 입후보자 마감일 후 2일 내 한인회에 인계하며, 한인회는 인계된 자금을 별도 관리하여 차기 한인회에 재 인계한다.) 선거비용 \$50,000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며, (선거비용 초과 시, 회계보고서와 함께 예상 초과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한인회 운영위원회에 신청하며, 운영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48시간 내 즉각적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하며, 이사회는 정관 제 6조 3항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도 관리되고 있는 회장후보

등록비에 한하는 지출을 결의할 수 있다. 분은 회장입후보등록비에서 충당한다.

(5) 선거비용 \$50,000불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감사의 확인을 거쳐 (회장당선자만 제외한 낙선자들에게 당선일 기준 20일 내에 반환한다. (회장후보등록비와 함께 당선일 기준 2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와 함께 차기 한인회에 인계한다.))

~~(6) 회장 입후보자가 본 선거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의 회장입후보등록금 \$100,000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7) 본 선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 (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은 회장입후보등록금에서 충당한다. (선관위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적이거나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차기 한인회에 인계할 선거비용 잔액에서 선 충당하며, 인계 후에는 한인회에서 그 비용을 감당한다.)

(8) 회장입후보등록비 \$50,000불에서 선거비용이 부족 시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감사의 확인을 받아, 당선일 기준 20일 이내 차기 한인회에 인계한다.

제 6조 [투표인 자격 및 기호추첨]

1) LA 카운티에 거주증명이 되는 18세 이상의 한인계 또는 한국인 혈통을 가진 정회원으로 한다.

2) 회장입후보자의 기표번호는 등록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추첨으로 정한다.

제 7조 [투표인 자격 및 선거권자 확인]

1) LA 카운티에 거주증명이 되는 18세 이상의 한인계 또는 한국인 혈통을 가진 정회원으로 한다. (정관 제 2장 2조 참조)

1) 2) LA 카운티에 거주 증명이 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 8조(투표용지와 투표시지참물)

1)투표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입후보자 성명을 기호 순으로 기재하여 선관위 확인, 날인된 것만 유효하다.

1) 2) 투표시 지참물은 DMV 발행 운전면허증, DMV 발행 아이디, 총영사관 발행 아이디 중 하나로 한다.

제 9조 [기표방식]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도구로 표시하여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

제 10조 [선관위 공고 및 홍보 사항] 선관위는 공고 및 입후보자 홍보를 (다음과 같

이) 총괄한다.

- (1) 선거실시 일자 공고(ㄱ)
- (2) 입후보자 기표 번호 공고(ㄱ)
- (3) 투표용지 양식과 기표방법 공고(ㄱ 및)
- (4) 당선자 확정 공고.

제 11조 [입후보자 선거홍보 활동]

1)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모든 홍보광고는 선관위에 광고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홍보를 실시하며, (광고매체는)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광고, 인쇄물광고, 인터넷 및 이메일, SNS광고 등이 ~~어에~~ 해당한다 (을 망라한다).

제 12조 [입후보자 선거 운동]

선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잡한 혼란을 예방하고 소모적이고 퇴폐적인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통제한다.

1)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 시부터 선거법에 적용되며,
20인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 이를 반드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단체, 친목회, 동창회, 노인가파트 개별방문, 기타 (유사한 모든) 모임-해당됨)

제 13조 [투표소 참관인]

1) 각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2인의 참관인을 정하여 투표 10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2) 참관인은 선거인, 투표용지, 서명확인, 투표과정을 지키고 감시하며 선관위 관계자와 협력한다.

3) 참관인은 선거 진행 방해가 되는 일체의 언사와 행동을 쓸 수 없다.

4)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자신의 투표 시외에는 투표장에 입장할 수 없다.

제 14조 투표소 설치 장소와 투표함 수는 선관위가 정한다.

제 15조 [투표함 관리 보존]

투표함은 참관인과 선관위원이 함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봉합, 날인하여 규정된

장소에 함께 운반한다.

제 16조 [벌칙 사항]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시, 후보자격 탈락 및 당선을 무효화 한다.

1) 단독 입후보하기 위해 타 후보자를 (실질적이고 상당한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거 기간 중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선전, 인신공격, 중상모략으로 선거 분위기를 혼탁, 악화시켰다는 선관위의 판정 시;

3) 금품 수수, 음식물제공, 퇴폐, 부정 선거로 판정될 시;

4) 후보자나 참관인의 투표 및 개표 선거 업무 방해 시;

5) 선관위에 제출될 제반 서류에 기재 사항의 (중대한) 허위 및 위반 사항 발견 시;

6) 입후보자 홍보활동 위반시;

(7) 선관위는 제 16조 1-6항 위반 사항을 적발 시,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통지하며, 서면통지 전달 후 24시간 안에 당사자의 직접대면을 통하여 사유를 파악하며, 심각한 과실이 인정될 때 제 19조의 결의에 따라 벌칙을 결정한다.) (서면통지 전달은 직접전달, 우편, Fax, E-mail, Electronic Communication, 등 유사한 보편적 방법을 망라한다.)

제 17조 [당선 및 재선거]

1)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하며 동수일 경우, 다시 재검하며, 또 동수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공식적으로 당선을 선포한다.

2) 등록 마감일까지 회장 입후보등록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 입후보자가 2인인 경우, 한 후보자가 자격 상실 및 탈락하면 남은 후보는 자동으로 무투표 당선된다.

4)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 후보자가 자격이 상실 및 탈락되면 남은 후보는 선거를 실시한다.

5) 입후보자 모두 자격 상실 및 탈락한 경우, (새 후보자로) 재선거를 실시하며, 자격이 상실된 입후보자는 재입후보 할 수 없다.

6)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 전원이 자격상실 및 탈락될 시는 선관위는 15일 이내 재등록을 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7) 선관위는 (상기 6항에 따른) 재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자동 해체되며, 해체일로부터 2일 이내, 제 5조 2(5)항에 따른 회계보고와 별도로, 선거비용 잔액을 한인회에 인계하며, 이후 모든 결정은 한인회 이사회의 결정 (결의)에 따른다.

제 18 조(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 19조(선관위 결의)

- 1) 모든 선관위 결의는 재적위원 ~~2/3~~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3) (선거관리 규정을 제외한) 회장선거 (실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정은 (한인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 보완 및 ~~(개정)~~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규정은 개정할 수 없다.)~~

제20조 본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상관계에 따른다~~ (이사회 의결 원칙인 본 한인회 정관 제 6장 2조에 따라 심의해 결정한다).

1차 수정일: 10/05/2011

2차 수정일: 02/09/2012

최종 수정일: